

보육정보센터운영민간위탁결정동의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2. 27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2. 27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1999. 3.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가. 제안이유

- 보육시설 이용주민의 편의도모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정보센터를 상반기 내 설치하여, 보육프로그램개발 보급 및 시설운영상담 등의 정보센터기능은 물론
- 장애아통합보육 및 영아전담 등 특수보육의 확대,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능의 다양화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 정부의 행정사무 민간위탁 확대방침에 맞추어 영유아보육에 전문성 있는 관내 보육학과 개설 대학교에 위탁운영함으로써 보육정보의 축적과 유지, 연구기능의 활성화로 안정된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조례 제1628호)에 의거 “보육정보센터운영 민간위탁결정”에 관하여 부천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부천시 보육정보센터운영 민간위탁결정동의(안)을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결(동의)함.

• 민간위탁 내역

- 위치 : 복사골문화센터 1층(어린이집 시설)
- 규모 : 1,180.49㎡(358평)
- 운영방법 : 관내 보육관련학과 개설 대학교 위탁운영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를 일괄위탁 할 것인지 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구분해서 위탁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았습니까?</p>	<p>○ 보육정보센터 내에 부속시설로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것으로서 시설운영의 연계성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일괄 위탁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를 한 바 있으며, 보육정보센터와 어린이집을 일괄 위탁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즉 어린이집은 보육정보센터 내의 부속시설로 해서 시범사업 차원에서 특수보육 위주로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p>

○ 어린이집을 보육정보센터 내에 부속시설물로서 보육정보센터와 통합운영하는 경우 장단점은?

○ 2대 때 부산보육정보센터를 갔었는데 보육정보센터가 있고 부설로 어린이집이 있어서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민했던 것을 그 어린이집에 적용하고 그것을 다시 연구 검토해서 그 결과물을 전국에 알려주고 이런 사례가 아주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부산에서 운영하였던 것처럼 보육정보센터와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 보육정보센터장과 어린이집 원장의 겸직문제와 임금지급 부분에 대한 검토결과?

○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가령 영양사라든가 사무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인원을 보육정보센터와 관련해서 동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감되고 또한 보육정보센터와 어린이집이 보육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효율성, 그리고 시범사업 차원에서 운영도 가능하고 각종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할 수 있어서 민간시설이라든가 국·공립시설에 우리가 보급하는 데 있어서 사전검증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센터장과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 관련 전문가라든가 교수가 배치될 사항이 아니고 별도의 시설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배치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100여 명이 넘는 특수보육을 전담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센터장까지 동시에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어린이집 원장은 시설장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두고 다만 센터소장은 비상근, 관련전문가라든가 교수를 활용해서 별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일정액을 활동비 성격의 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 센터장과 어린이집 원장하고 같이 겸직을 않는다면 보육정보센터장이 어린이집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까요?

○ 보육정보센터와 어린이집을 일괄위탁하는 경우 어린이집은 공립보육시설이 되는 것입니까?

○ 북사골문화센터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어린이집과 함께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후 만약의 경우에 북사골문화센터가 공단이나 다른 방향으로 운영주체가 결정되면 사용문제에 관해서 제약이나 다른 요소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 북사골문화센터 전체를 위탁을 줄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할 것인지 관리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주체가 결정된 다음에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비상근하면서 어린이집 운영도 관장하고 센터 기능도 종합적인, 총괄적인 기능으로 해서 관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시에서 일반 주민 자녀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때문에 시립시설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인건비의 55%는 자부담시킬 수가 있고 국고보조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공단도 시에서 설립한 공기업 차원의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시에서 직접 중재를 해서라도 공유할 것은 공유하고 별도로 독립돼서 부담할 것은 부담을 시켜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정보센터를 개관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여부가 결정된 후 개관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위탁자 모 집이나 선정절차가 필요하고 필요한 장비라든가 집기 구입 등 개관 준비를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문화센터 전체에 대한 운영방안이 결정 안 된 상태에서 따로 방안이 나왔고 또한 시에서 위탁하지 않고 공단이나 다른 단체에서 위탁할 경우에는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안 되며 시비로 전체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린이집만큼은 시에서 위탁하는 것이 시 재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개로 해서 위탁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 보육정보센터의 위탁기간은?

○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현재 2년이고 특별한 이상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연임할 수 있어 4년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므로 어린이집을 보육정보센터의 부설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보육정보센터의 위탁기간을 4년 정도로 해서 어린이집과 위탁기간을 연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전문화된 시설이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특수 보육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보 축적이라든가 노하우 축적을 위해서는 3년 이상 5년 정도 사이에서 별도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 사항은 민간위탁기관적격자격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선정되는데 위원회에서 검토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